

【 7 】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2005. 9.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급속하게 변모하는 우리시 도시화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여 투자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기적 수준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좋은 기업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성문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적용 범위는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업종등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로서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안 제3조)
- 나. 주요시책 결정,유치 기업의 지원등 심의를 위해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 (안 제4조 내지 제11조)
- 다. 국내 · 외 투자기업의 공장시설 보조금등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시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운영함.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기업 유치 에이전트로 활용. (안 제 17조)
- 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건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첨단 제조업 및 특화산업 유치를 지원함. (안 제20조)
- 바. 유치기업에 대해 지방산업단지 장기 분할매입시 이자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이 산업단지를 매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 사.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시설비의 일부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원. (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납부 시세의 일부를 운영 장려금으로 지급. (안 제24조)
- 자.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도기술수반산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가산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안 제25조 및 제26조)
- 차. 정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항목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배제.
(안 제27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기업체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양주시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 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첨단업종
5. 섬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고도섬유기술 수반업종으로 양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6. 기타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제4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 · 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 · 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2. 양주시의회 의원
 3.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기타 기업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양주시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전출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다음 각호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시설 보조금, 고용보조금, 운영장려금, 지방산업단지 장기분할매입시 이자지원금
2.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
3. 기타 시장이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유치 활동

| 17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주시 기업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양주시 기업유치자문위원과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사무를 민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유치기업 지원

제2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첨단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투자하고자 하는 입지가 개별입지일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기반시설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장비설치 등의 시설투자금액(이하 “시설투자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업체
2. 첨단특화산업(정보통신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 자동차 산업을 말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원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4.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유치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시중은행의 기타물건 담보대출 기준금리 이자를 적용한다.

②시장은 유치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를 장기 분할 매입할 경우 분할매입에 따른 이자 발생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 제1항과 같다.

제22조(공장시설 보조금)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시설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0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운영장려금) ①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에서 이전해 오는 유치기업에 대하여 운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이전 가동일로부터 5년간은 납부한 시세의 100분의50, 5년경과 후 10년까지는 납부한 시세의 100분의2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5조(가산지원과 지원의 세부기준 등) ①제21조 내지 제23조에 의한 지원 중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산업에는 지원기준의 1.5배, 국내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이거나 5년간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지원기준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제21조 내지 제23조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중복지원 금지)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람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 한 때
 4. 기타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